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고 등 교 육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성인학습자의 대학 유입 및 계속 교육 지원을 위한 핵심적 기제인 학습경험인정제의 적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습경험인정제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학습경험 인정범위 상한 및 절차 완화(안 제15조제1항제3호, 동조 제2항 및 제4항, 제5항 삭제, 동조 제3항 개정)

학점인정의 대상을 넓히고, 학점인정의 범위·기준을 학교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취지에 따라 동법 시행령 내 학습경험 인정범위 상한 및 절차를 삭제함

나. 비수도권 특별전형 관련 입법 미비사항 개정(안 제29조제2항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2.2.28., 대통령령 제32507호)으로 신설된 제29조제2항12의2호 비수도권 일반대학 특별전형 관련 [별표1]에 모집정원의 상한을 미설정하고 있으나, 동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시행령 제29조제2항과 [별표1]이 일치하지 않는 바, 해당 조문에서 삭제하여 이를 바로 잡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1. 14. ~ 12. 2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3항) 중 “법 제23조제1항제6호”를 “법 제23조제2항”으로, “다른 학교·연구기관”을 “학교(해당 학교를 포함한다)·연구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2호·제3호·제8호·제9호·제11호·제12호·제12호의2·제13호”를 “제2호·제3호·제8호·제9호·제11호·제12호·제13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1. · 2. (생 략) 3.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이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나목은 제외한다) 및 제3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학점인정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3 이내 2. 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3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 가. 대학 간 협약을 통해 정하는 학점인정의 범위가 줄	제15조(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 등) ① ----- ----- ----- -----. 1. · 2.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대학 간 협약을 통해 정하는 학점인정의 범위 이내

나. 대학 간 협약을 통해 정하는 학점인정의 범위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이하인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이내

3. 제1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3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

③ 학교의 장이 법 제23조제1항 제6호에 따라 학생의 학점 취득을 인정하려면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 학생이 선택한 전공에 따른 교육과정과 국내외의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 또는 근무한 경험 사이에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 제6호에 따라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학점인정을

② ----- 법 제23조제2항-

학교(해당 학교를 포함한다)·
연구기관 -----

-----.

<삭 제>

위한 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학점인정심의회”라 한다)의 심
의를 거쳐야 한다.

⑤ 학점인정심의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29조(입학·편입학 등) ① (생략)

②다음 각 호의 사람의 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호 · 제3호 · 제8호 · 제9호 · 제11호 · 제12호 · 제12호의2 · 제13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총학생수는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

1. ~ 16. (생략)

③ ~ ⑦ (생략)

<삭 제>

제29조(입학·편입학 등) ① (현
행과 같음)

②

제2호 · 제3호 · 제8호 · 제9호 · 제11호 · 제12호 · 제13호

1. ~ 16.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평생학습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6383